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문

□ 지원내용(3년만기)

○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+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◈ 지원예시
-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⇒ **3년간 약 720만원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***

***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**
- **(내일키움장려금)**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**(내일키움수익금)**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**(기타장려금)**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□ 가입 및 유지 기준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

(단위: 원/월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기준 중위소득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	8,514,994
가입기준 (소득상한)*	1,114,223	1,841,305	2,357,329	2,864,957	3,347,868	3,809,185	4,257,497
유지기준 (소득상한)**	4,714,657	4,714,657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	8,514,994

* 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
** 유지기준: 가구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
□ 해지요건

구 분		해지사유	지급액
지급해지	만기	- 3년간 통장유지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	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
	중도	- 가구의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초과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*)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*** (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) 가입 1년 이내: 총 4시간 / 1년 이상~2년 이내: 총 7시간 / 2년 이상: 총 10시간**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- 생계·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	
환수해지	만기	-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	• 본인적립금과 이자 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
	중도	-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-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- 압류, 가압류 시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- 생계·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	

□ 유의사항

○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

-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~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*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.

***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**

- 입금일 착오,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
[참고] 2024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

1월	'23.12.23(토)~`24.1.22(월)	**7월**	6.25(화)~7.22(월)
2월	1.23(화)~2.22(목)	**8월**	7.23(화)~8.22(목)
3월	2.23(금)~3.22(금)	**9월**	8.23(금)~9.23(월)
4월	3.23(토)~4.22(월)	**10월**	9.24(화)~10.22(화)
5월	4.23(화)~5.22(수)	**11월**	10.23(수)~11.22(금)
6월	5.23(목)~6.24(월)	**12월**	11.23(토)~12.23(월)

○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

- **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**
- 가입 후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'적립중지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, 근로·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참고사항

- **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** 수원시 복지정책과와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**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**될 수 있습니다.

◈ **희망저축계좌Ⅱ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**

- 우만지역자활센터(☎ 031-231-9208)
- 수원지역자활센터(☎ 031-890-0194)
- 희망지역자활센터(☎ 031-257-3991)
- 수원시청 복지정책과(☎ 031-228-424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)